



# 감사(위원회)의 회계감독

2024.06.07

# 감사(위원회)의 회계감독

## 감사(위원회)는

- ☑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
- ☑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부정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
- ☑ 회계부정 발생 시 조사 및 보고 주체로서 활동하고
- ☑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정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구분	경영자 (회계주체)	감사(위원회) (내부 회계감독)	외부감사인
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법 제6조	작성 주체	내부감독	외부감사
감사(위원회)의 감사보고서 작성 상법 제447조의 3, 4	지원	작성 주체	-
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법 제8조, 동시행령 제9조	운영 주체	내부감독	외부감사
부정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외부감사법 제28조	운영 주체	내부감독	-
회계 부정조사 및 보고 외부감사법 제22조	지원	조사 및 보고 주체	외부감사
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 외부감사법 제10조, 동시행령 제13조	지원	선정 및 평가 주체	-

## I. 재무제표 작성 감독 및 감사보고서 제출

### 재무제표 작성 감독

회사(ex. CFO 조직)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 
보유 및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감독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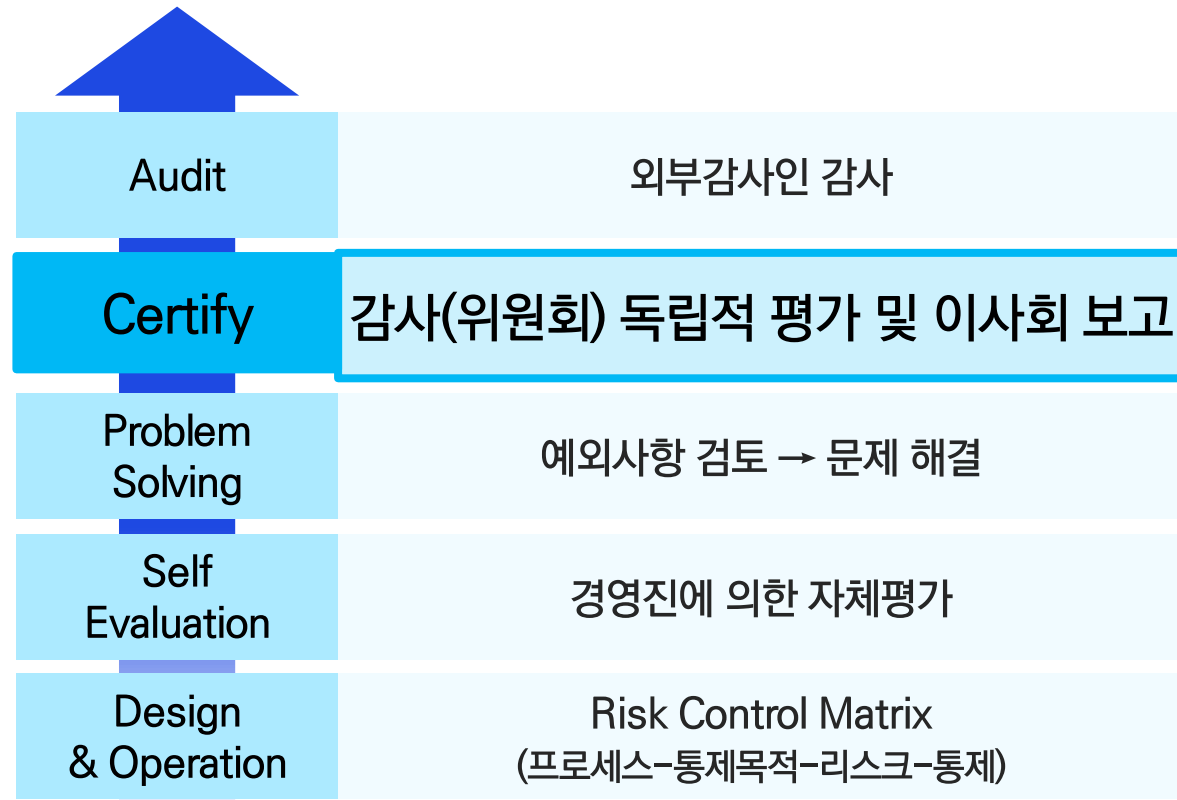
재무조직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재무조직 규모의 적정성 판단</li><li>팀 내 직급 분포 및 근속연수 파악 (이직률 등)</li><li>업무 분장 (자금·회계, 내부회계 평가조직, 현업) 확인</li></ul>
전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구성인력의 유관 업무 경험 유무</li><li>교육, 훈련 혹은 전문 자격보유 여부 확인</li><li>전문성 보완방안 (PA 활용 등)</li></ul>

### 감사보고서 제출



- ① 회사로부터 주주총회일 최소 6주 前 연차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수령  
참고) 재무제표의 작성책임 : 회사의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
- ② 연차 재무제표 수령 후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
- ③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

## II.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독



경영진의 운영실태  
보고수령 및 점검

- 평가계획의 적정성 검토
- 모든 중요한 취약점의 보고 수령여부
- 미비점 평가와 개선조치의 이행현황 확인
- 성과평가 반영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



외부감사인  
감사절차 확인

-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한 확인



평가 보고서 작성

- 내부고발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

## III. 부정 신고제도 및 회계부정 조사 감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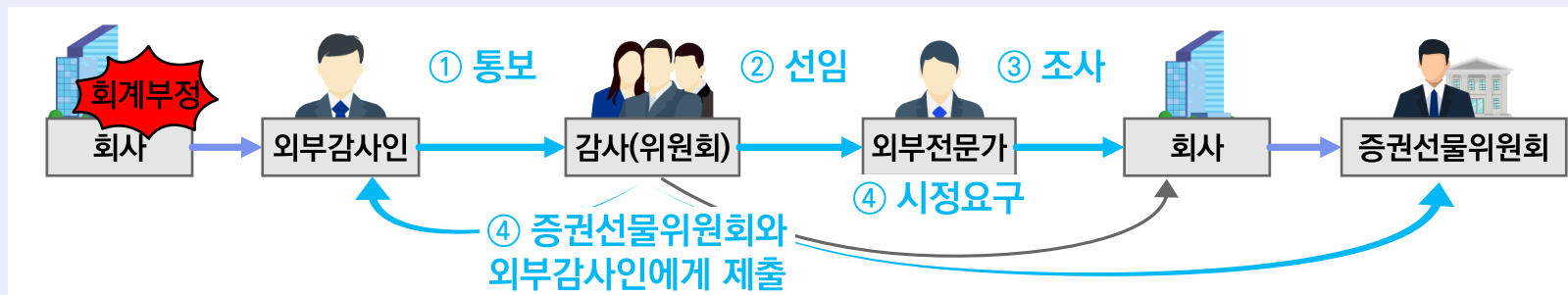
### 부정 신고제도 감독

회사가 운영하는 **부정신고제도**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고, 적절히 운영하며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**감독**

외부감사법 제28조  
(부정행위 신고자의 보고)

- 신고자 또는 고지자의 신분보장
- 직접 혹은 간접적인 불이익한 대우 금지
- 위반 시, 회사와 담당 임직원 연대배상

### 회계부정 조사 감독



- ① 외부감사인이 **통보한 회계부정(의혹)에 대한 내용을 확인**  
(자산규모 관계 없이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(의혹)은 통보 대상)
- ② 경영진에게 요구한 내부조사와 자진시정을 확인하고 **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진행**
- ③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과 조사계획 협의 후 **부정조사의 전 과정을 감독**
- ④ 부정조사 결과 경영진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사의 시정조치와 부정조사 결과를 **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**

## IV. 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

감사(위원회)는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로서  
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 
원활한 의사소통과 평가를 통해 회계감독을 수행

외부감사인의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</li></ul>
외부감사인 제공 비감사업무에 대한 사전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감사(위원회)의 동의 또는 협의</li><li>국제윤리기준에 따른 감사(위원회)의 사전 동의(승인)</li></ul>
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(경영진 배석 없이 분기 1회 이상 회의)</li><li>외부감사 계획 - 수행 - 결과의 각 단계별로 커뮤니케이션 수행</li><li>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검토 수행</li></ul>
외부감사인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감사계약에서 제시된 보수와 투입시간 및 감사투입인원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점검</li></ul>